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업종별 과징금액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호텔업										휴양 콘도 미니 엄업	전문 휴양 업	종합 휴양 업	야영 장업	관광 유람 선업	관광 공연 장업	외국 인관 광 도시 민박 업	한옥 체험 업	국제 회의 시설 업		국제 회의 기획 업	종합 유원 시설 업	일반 유원 시설 업	기타 유원 시설 업
		관광호텔업			수상 관광 호텔 업	가족 호텔 업	한국 전통 호텔 업	호스 텔업	소형 호텔 업	의료 관광 호텔 업																		
종합 여행 업	국내 외여행업	국내 여행 업	5성급 · 4성 급	3성급							2성급 이하																	
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나. 관광사업의 변경등록기간을 위반한 경우 다.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 제4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40	40	120	80					
2.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게 되는 경우 나.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법 제5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40	40	120	80			1600	1200	800
		800	800	400	500	300	200	200	200	200			300				200		200	40	40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 우(여행업자만 해당한 다)																												
17. 법 제38조제1항 단서 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 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38조	800	400																									
18. 법 제78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8조																											
가. 사업에 관한 보고 또 는 서류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800	400	400	1200	8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800	400	800	200	200	200	40	40	1200	800	500	800	400	80	
나. 관계 공무원이 장부 · 서류나 그 밖의 물 건을 검사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800	400	400	1200	8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800	400	800	200	200	200	40	40	1200	800	300	800	400	80	